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237

발의연월일: 2021. 6. 30.

발 의 자:정춘숙·강선우·권칠승

김상희 · 김영진 · 김윤덕

김정호·박 정·박홍근

윤후덕 · 임종성 · 허종식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, 보호기간 연장 사유, 자립에 필요한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미성년자인 18세에 보호대상아동을 자립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아동자립지원 추진협의회에 당사자인 지원대상아동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아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로 상향하고 보호 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아동을 대표하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, 제38조제2항, 제4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18세"를 "19세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보호대상아동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

제3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한다.

제41조제1항 중 "공무원으로"를 "공무원 및 지원대상아동을 대표하는 사람으로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	제16조(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
등)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	<u> 등</u> ) ①
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	
호대상아동의 연령이 <u>18세</u> 에	<u>1</u> 9세
달하였거나, 보호 목적이 달성	
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·도	
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	
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	
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	
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	4
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면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	
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	
간을 연장할 수 있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2의2. 보호대상아동이 2년 이내
	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을
	요청하는 경우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
$\bigcirc$	(생	략)
$(\mathfrak{S})$	( ^次	4)

제38조(자립지원) ① (생 략)

<신 설>

#### ② (생략)

제41조(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)

-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 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<u>공무원으로</u> 구성되 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.
- ② (생략)

- ⑤ (현행과 같음)
- 제38조(자립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  - ② 국가는 보호대상아동의 위 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 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한다.
  -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41조(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)

- ② (현행과 같음)